

---

# 입 법 정 보

---

2020-3호



# 목 차



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4
2.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5
3.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5
4.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6
5.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6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7
7.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10
8.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10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3
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13
11.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14
1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15
14.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	16
1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17
16.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18
1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19
1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
1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22
20.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23
21.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23
22.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보건복지부) .....	24
23.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25
24.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25
25.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26
26.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27
2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28
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29
29.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30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30
3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 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31
32.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32
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33

34.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34
35.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34
36.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	35
3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36
3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37

# 정부입법 예고

## 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20. 2. 3.

• 마감일자 : 2020. 3. 16.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시 취득경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자산업법」(법률 제16789호, 2019. 12. 10. 공포, 2020. 06.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입증자료 제출대상 작물과 입증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검역회피 등 불법·불량 종자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판매신고하려는 모든 종자에 대해 검역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 묘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품질표시 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검역증명서류 제출 근거 보완(안 제27조제1항5호)

1) 검역회피 등 불법·불량 종자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품종의 종자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종자에 대한 검역합격증명서, 격리재배합격증명서 등의 검역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나. 입증자료 제출대상 작물의 지정 및 자료의 범위 설정(안 제27조제1항7호)

1) 품목의 특수성, 권리침해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단 도입에 따른 농가 피해 우려가 큰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로서 과수작물, 고구마 및 그 밖의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에 대해 종자 취득경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2) 제출해야 하는 입증자료의 범위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품종의 조건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달리 정함

다. 묘목의 품질표시 사항 간소화(안 제34조제1항)

1) 씨앗종자와 달리 묘목은 거래과정에서 소비자가 어느 정도 육안으로 품질 등의 정보 파악이 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로 표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아율,





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서식 수정

##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20. 2. 7.

• 마감일자 : 2020. 3. 18.

○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규정하고, 겸직이 제한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수사·감사 의뢰 대상 비위행위의 종류, 채용비위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사실 공개 절차 등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인사감사 방법, 외부 회계감사 의무기관 대상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고 지방계약법령 개정 등에 따른 준용규정 정비,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설립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 마련(안 제8조의2)

- 1)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현행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서 설립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던 것을 시·도에서 설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지정·고시 기관, 시·군·구에서 설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기관에서 설립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며, 전문인력 및 관련 분야 연구 실적 등을 갖추도록 개정하고자 함

#### 나. 겸직이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범위(안 제9조의2)

- 1)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 업무의 공공성, 공정한 직

무수행의 필요성, 국가·지방공무원, 국가공공기관 임직원, 지방  
공기업 임직원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다.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안 제10조의2)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대상 비위행위, 채용비위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사실  
공개의 심의·의결 기구와 절차, 채용비위 관련 합격취소의 기  
준과 절차를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 2)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위법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 또는  
약속,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성폭력범  
죄 등으로 비위행위를 규정하는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자  
방자치단체 산하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름·나이·  
주소 등을 관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며 채  
용비위로 인하여 합격 또는 채용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 취소,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여 승진, 전직 등이 된 경우 해당  
승진, 전직 등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 당사자에 조치 내  
용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라. 채용비위 근절 등을 위한 인사운영 적정여부 감사(안 제10조의3)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인사감  
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 2)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승진, 평가 등 특정 사항을 인사감사  
의 대상으로 하고 그 절차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  
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마. 지방계약법령 준용규정 개정(안 제12조제1항)

- 1) 지방계약법령의 체계변경 및 다수 조문 개정으로 준용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2)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포  
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준용하도록 하며,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다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을 신규로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바.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3항)

- 1) 국가공공기관, 지방공기업과 달리 출자·출연 기관은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규정이 없어 동일 수준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이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대행하거나 소유한 시설·설비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자회사(해당 출자·출연 기관이 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한 법인)와의 수의계약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사. 외부 회계감사 의무기관 대상 규정(안 제14조의2)

- 1)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법률이 개정 됨
- 2) 이에 따라 설립 목적과 형태를 고려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기관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출자기관,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또는 수익금액 10억원 이상 출연기관으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아. 경영공시 항목 추가(안 제21조)

- 1)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으로 재무현황과 기타 경영에 중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 2) 이에 따라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자본금 출자나 기본재산 출연현황, 사채발행,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등을 경영공시 항목으로 추가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자. 통합공시 기준 제정(안 제22조)

- 1) 현행 경영실적 평가 대상 출자·출연 기관에서 전체 출자·출연 기관으로 통합공시 대상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통합공시의 기준과 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통합공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공시기준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항목별 세부기준, 품질관리, 불성실 공시에 대한 조치 등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을 규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2)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지방직영기업만이 아닌 전체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조항의 명칭을 ‘지방직영기업의 범위’에서 ‘지방공기업을의 사업범위’로 변경하고
- 3) 법에서 위임한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자산관리수탁 대상인 주택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공원, 주차장, 놀이터 및 체육시설 등 부대 및 편의시설로 정의

나.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안 제57조의4)

- 1)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위임에 따라 자치단체 장의 지방공사 공단 임원에 대한 수사 감사 의뢰 대상 비위행위, 채용비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사실 공개의 심의 의결 기구와 절차, 채용비위 관련 합격취소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 필요
- 2) 자치단체장이 수사기관 등에 수사 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임원의 비위행위는 직무 관련 위법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 또는 약속,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강간, 강제추행 등) 및 성매매, 법령 정관 내규 등을 위반한 인사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등으로 정의
- 3) 채용비위행위자 인적사항 및 비위사실 공개 절차를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지자체 산하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소속 지방공사 공단 명칭·주소·담당 직무 및 직위, 채용비위 행위 내용 및 방법 및 채용비위 관련 유죄 확정판결 내용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의
- 4) 채용비위 관련 합격취소 기준을 채용비위로 인하여 합격 또는 채용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 취소, 채용비위에 가담 협조하여 승진 또는 전보된 경우 그 승진 또는 전보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합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 당사자에 조치 내용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다. 채용비위 근절 등을 위한 인사운영 적정여부 감사 관련(안 제57조의5)

- 1)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8 위임에 따라 자치단체 장이 지방공사

공단에 대해 실시하는 인사감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

- 2) 인사감사 대상은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승진, 평가 등 특정 사항으로 함
- 3) 절차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

라. 지방계약법령 준용규정 현행화 (안 제57조의6)

- 1)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위임에 따라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현재 준용하고 있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체계가 변경되고 및 다수 조문이 개정되어 준용 규정을 현행화함
-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준용규정 삭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 신설에 따른 추가, 효율적 계약업무추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및 제79조(단가계약)를 추가 준용하고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를 삭제, 부정당업체 및 조세포탈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법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97조까지를 추가 준용

마.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 제외 절차(안 제58조의2)

- 1)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위임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위임
- 2) 지방공기업은 행안부장관에 타당성 검토 면제대상 확인을 요청하고 행안부장관은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면제대상임을 확인·통보하도록 규정하고 면제검토시 제출서류, 신청 절차, 검토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 운용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

바. 국제입찰대상 도시철도공사 현행화(안 별표1)

- 1) 별표1(국제입찰대상 도시철도공사\*)에 명시된 서울메트로와 서울특







사.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의 계산방법 등(안 제23조의7)

- 1)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한 자를 대상으로 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부적정처리 이익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아. 국고보조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요청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 1) 환경부장관은 원활한 국고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14.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2. 10.

● 마감일자 : 2020. 3. 11.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21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안 제2조, 제3조)

- 1)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 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안 제4조)

-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할 때에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산업 및 인프라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

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안 제5조)

- 1)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 방안,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 과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시범 운행지구의 지정 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함  
라.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1)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계획서와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증서(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및 공탁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을 운행하는 한정운수면허는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으로 함.

마.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안 제14조)

- 1)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서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도록 함.

바. 보험가입의무(안 제15조)

- 1)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을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1억 5천만원, 부상 시 3천만원,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 시 사고당 10억원 등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1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20. 2. 10.
- 마감일자 : 2020. 3. 23.
-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발표(’19.8.21)에 따라 세부과제인 산학 간 개방형 혁신 기반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회사 주식매각을 통한 기술지주회사의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자 자회사주식보유

의무 예외기간을 연장하고, 기술지주회사 운영 관련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명시하며,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발 기술사업화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자회사 주식보유 의무 예외기간 연장(안 제45조)
- 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규정 정비(안 제44조)
- 다. 기술지주회사 전문인력 자격기준 명시(안 제42조)
- 라. 기술지주회사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50조)

## 16.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20. 2. 11.
- 마감일자 : 2020. 3. 23.

○ 기후변화, 해양오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국제협력이 확대되는 추세로, 국제 환경 협력 및 협상에서 국익을 확보하고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운영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619호, 2019.11.26. 개정, 2020.5.27. 시행)됨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와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부장관이 국제 환경 협력 관련 업무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규정(안 제12조의2)
  - 1) 국가환경협력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 나.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28조)
  - 1) 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업무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1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20. 2. 11.
- 마감일자 : 2020. 3. 23.
-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문화재재교육지원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전문인력 양성 등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 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문화재매매업을 허가 받은 자가 상호를 변경하거나 영업장의 주소지 등이 변경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변경신고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변경신고기한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안 제2조 신설)
    - 1) 문화재교육을 학교문화재교육과 사회문화재교육으로 분류하여 규정함
  - 나.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10조의2 신설)
    - 1)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 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별표5 및 별표6 신설)
    - 1)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별표5)을 충족하여야 하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2)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 3) 문화재교육지원센터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는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함

4)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을 규정함  
라. 문화재교육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5 신설)

1) 문화재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경비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기한 등 규정(안 제41조 제5항, 제41조의2)

1)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상호를 변경하거나 영업지의 주소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바. 문화재청장 권한의 위임사항 규정(안 제42조)

1) 문화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1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2. 11.

• 마감일자 : 2020. 3. 23.

○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 5. 1.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안 제2조, 제3조)

1)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변경사유, 변경절차 등을 규정하여, 드론산업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효과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법제화함.

나. 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안 제4조)

1) 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드론산업 지원 및 육성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드론산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조, 제6조, 제7조)

- 1)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드론산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드론 관련 주요정책 및 자금조달 방안 등 드론 산업 관련 주요사항 및 부처 간 협업 필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라.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지원 등(안 제8조)

- 1) 국내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은 국가 직접 R&D를 수행하거나 민간 R&D에 관련 비용을 지원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마.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운영 등(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 1)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시·도 지사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구역을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드론제품을 신속히 상용화 할 수 있도록 테스트 베드 조성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

바.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운영 등(안 제12조)

- 1)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비행 가능여부, 안전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드론시범사업구역을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새롭게 개발된 드론이 원활하게 시험·실증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함.

사. 창업 활성화 지원(안 제13조, 제14조)

- 1) 정부가 창업자에게 용자, R&D성과 제공, 창업공간·장비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드론산업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를 도모함.

아. 드론 첨단기술의 지정(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기술이 접목된 드론제품을 첨단기술제품으로 지정하여 상용화 이전단계의 규제를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첨단기술제품이 신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안 제18조, 제19조)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침해시 대응 및 복구, 관련 교육 등을 전담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드론 관련 주요 신기술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함.

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20조)

- 1) 정부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지정하여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함.

카.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안 제21조)

- 1) 정부는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 국내 드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내 드론산업의 시장 외연 확대를 도모함.

## 1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20. 2. 12.

• 마감일자 : 2020. 3. 23.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일부개정( '19.12.3일 공포, ' 20.6.4일 시행)됨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장비·인력 기준,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 등의 위임사항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며,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범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정비(안 제5조)

- 1) 지진가속도계측을 해야 하는 대상 시설의 세부 기준을 고시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체계를 구축
- 2) 현재 지진가속도계측 대상으로 지정 고시되어 운영 중인 시설 범위를 명확화

나.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시험기관의 장비·인력 요건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1)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구비해야 하는 장비·인력 요건을 명시

다.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마련 등 관련사항 신설(안



- 타 제조사 간 장비의 호환성까지 담보하는 규격으로 오해 불식  
 나. 사용기한 연장 사용 장비 범위 확대, 최대 사용기한 신설(안 제27조)
- 1) 소방차량에 대하여 성능확인 후 사용기한을 연장하던 것을 사용빈도가 현저히 낮은 소방장비에 대해서도 연장 사용 범위를 확대
  - 2) 연장 사용 시 한도 규정이 없어, 최대 사용이 가능한 한계 규정 마련
- 다. 시·도별 소방차량 정비사업소 지정 근거 신설(안 제36조 및 제43조)
- 1) 소방장비정비센터를 운영중이나, 전국적 정비 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시·도지사가 민간 정비사업소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22.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20. 2. 12.
  - 마감일자 : 2020. 3. 23.
- 「결핵예방법」이 개정( '19.10.31) 공포( '19.12.3) 되어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단생활시설 관할기관에 결핵의 집단 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관할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규정의 일부를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폐교 활용 야영장에 한하여 ‘야영장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 적용 제외(시행령 별표1 제4호다목(1)(아) 단서조항 신설)
    - 1) 야영장업 등록 시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이라도 폐교 활용 야영장에 한하여 적용 제외
    - 2) 시도교육청 보유 폐교 1,409개소 중 554개소(39.3%)의 폐교 내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전체면적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라 야영장 등록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 나.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의 폐교를 활용하여 야영장을 등록할 경우 전체면적 및 건축물 면적 제한 적용 제외(시행령 별표1 제4호다목(1)(자) 단서조항 신설)



처방전 발급방법, 수의사가 직접 처방 조제 투약하는 경우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할 사항을 마련함

○ 주요내용

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항 마련(안 제11조의2)

- 1) 시스템 구축 운영 시 포함되어야 할 필요사항, 수의사처방관리 시스템 운영을 수의업무 관련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 마련
- 2) 시스템 운영 대행 기관은 시스템 정보의 보안, 정보 전달체계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과 운영인력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함

나.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을 경우 처방전 발급 방법(안 제11조의2제4항)

- 1) 수의사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시스템을 통해 처방전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처방전을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하도록 함

다. 수의사가 직접 처방 조제 투약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할 사항(안 제11조의 2제5항)

- 1) 수의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25.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2. 12.
  - 마감일자 : 2020. 3. 23.
-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6638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으로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기존 철도차량에서 철도시설로 확대되고,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과 과태료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4548호, 2017. 1. 17. 공포, 2018. 1. 28.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노면전차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정하는 한편,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기준에 국가기술자격증 미보유자의 점수 및 학력점수를 하향조정 하고, 철도현장의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취득 시 교육 및 평가를 면제한 관제업무종

사경력자에 대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철도안전 국가전문자격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비영리법인 또는 학회 등 단체에서 운영 및 관리토록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필요한 철도시설 규정(안 제30조)

- 1) 감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철도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안 제48조의2 신설)

다.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 일부 삭제(안 제60조제1항제1호 삭제)

- 1)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경력자에 대한 자격기준 삭제
- 라. 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일부 삭제(안 제60조의3제1항제1호 삭제)

- 1) 비영리법인 또는 학회(단체)를 제외한 타 법률에서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은 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에서 삭제

마.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 개정(안 별표 1의2 개정)

- 1)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기준에서 자격별 경력점수의 배점 중 철도차량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배점을 조정하고, 학력점수의 배점을 전체적으로 조정(안 별표1의2 개정)

## 26.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2. 12.

• 마감일자 : 2020. 3. 23.

-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6638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으로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기존 철도차량에서 철도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철도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의무 입법취지를 살리고자 과도한 설치면제 항목을 삭제하고,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의 운전면허 취득 시 업무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이론교육을 도입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자의 기능역량강화 및 안전운행을

위해 실무수습 시간(거리)제를 법제화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도모코자 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의 비상 시 조치 등 추가,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 세분화, 규제의 재검토기간 연장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교육훈련의 이론교육 신설(안 제20조제3항 별표 7)

- 1) 철도차량의 종류별에 따른 이론교육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하고, 노면전차운전면허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소지토록 함

나. 운전면허 기능시험 항목 추가(안 제24조제2항 별표 10)

- 1) 디젤·제1종·제2종 철도차량 운전면허소지자가 다른 차량 운전면허의 기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비상 시 조치 등에 대한 항목 추가

다.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안 제35조 별표 11)

- 1) 철도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철도차량의 운행장애 등 발생 여부에 따라 처분기준을 세분화 함

라. 운전업무 실무수습 시간 또는 거리제 도입(안 제37조제2항, 별표 12)

- 1) 철도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운전면허취득자의 실무수습 시간(또는 거리)을 철도차량 운전면허종별로 실무수습교육항목과 교육시간 또는 거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마.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기준 및 방법(안 제76조의2)

- 1) 철도시설에 설치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방법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대체수단을 통한 철도차량 운전조작 상황 파악이 한계를 가짐에 따라 해당 설치면제 항목을 삭제

바.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는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안 제96조)

## 2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20. 2. 13.
- 마감일자 : 2020. 3. 25.

○ 종전에 시행령에서 정한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취약지원 절차를

법률에 정하면서 성폭력 피해자가 전학 및 편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96호, 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등의 취학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현행 제4조제1항 삭제) 및 하위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안 제4조제1항, 제2항)

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20. 2. 13.
- 마감일자 : 2020. 3. 25.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신청자를 피해자 외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확대하는 한편, 삭제지원 대상을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96호, 2020. 1. 29 공포, 2020. 4. 30. 시행)됨에 따라 추가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신청자와 삭제 지원 대상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대상 확대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삭제 지원 대상을 불법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로 확대(안 제2조의6 제1항·제2항)

나.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신청자 확대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신청자를 피해자 외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확대(안 제2조의6 제3항)

## 29.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20. 2. 13.                      • 마감일자 : 2020. 3. 4.
-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을 요하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각 목의 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3453호, 2015. 7. 31. 제정, 2016. 8. 1. 시행)으로 이관(移管)됨에 따라 상법 시행령에서 원용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규정이 삭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법적 흠결을 정비하여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명확화함으로써 적법한 감사위원회 설치를 독려하여 준법경영 정착 및 공정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적용 법령 변경(안 제37조 제2항 제4호)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4호 각 목의 기관” 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기관” 으로 변경

##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20. 2. 13.                      • 마감일자 : 2020. 2. 27.
-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해당 여부 판단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선정방법을 정하고,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취업계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

을 확대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산정 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인의 범위 정비(안 <별표 1>)

- 1) 현행 경력관리 및 교육 제도에서는 건설기술인을 3개 분야(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제3호 신설).

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 정비(안 <별표 3>)

- 1) 현재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마다 기본교육(최대 3회)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해당 분야와 상관 없이 기본교육을 1회만 받도록 일원화하여 건설기술인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 2) 공공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를 위해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업무역량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
- 3) 현재 계속교육 이수시기가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 마다 상이하야 교육 이수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분야 업무 수행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받도록 이수시기를 통일하도록 함.

다.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정비(안 <별표 4>)

- 1) 원격교육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해당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20. 2. 13.
- 마감일자 : 2020. 2. 27.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약칭을 ‘주행세’에서 ‘자동차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

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에서 환급세액 기재란의 세목의 명칭을 ‘주행세’에서 ‘자동차세’로 변경함.

### 32.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20. 2. 13.

● 마감일자 : 2020. 2. 27.

○ 다주택자의 공동소유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수입금액 산정방법,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대상 운전자의 범위 및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임차승용차의 요건 등을 신설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 상한배율 조정,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 절차 구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주택자의 주택 수 계산시 포함되는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은 해당 주택의 전체 수입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일을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로 함.

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대상 운전자를 해당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및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지원한 자로 규정하고, 리스 외에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업무관련자로 운전자를 한정하고 계약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는 차량임차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 적용되는 이자율 및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는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연 2.1%에서 연 1.8%로 인하함.

- 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연구개발비 계산특례로 매출액을 이용하는 방법과 매출총이익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신설함.
- 마.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단순경비율로 추계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준인 소득상한 배율을 간편장부대상자는 2.6에서 2.8로, 복식부기의무자는 3.2에서 3.4로 각각 상향조정함.
- 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원하는 금액’을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으로 규정함.
- 사.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지점간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에 있어 거래 인식의 고려사항에 중요한 인적기능을 추가하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자본의 계산 절차를 마련함.
- 아. 경매의 승마투표권,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에 대한 환급금에 대하여 원천징수 후 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1건당 5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하향조정함.
- 자.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교부금에 대하여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조합원 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도를 신설함.
- 차. 국세청장이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때 자료제출 대상기간을 5년 이하로 특정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함.

### 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20. 2. 13.
- 마감일자 : 2020. 2. 27.
- 물납 불허가사유 또는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물납신청 철회의무 또는 물납재산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4.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20. 2. 14.                      ● 마감일자 : 2020. 3. 26.
- 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재해구호법 신설 조항(제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 명시 (안 제4조의3)
    - 1)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서 위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임기,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 나.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 명시 (안 제4조)
    - 1)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서 위임한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임기,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 35.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20. 2. 14.                      ● 마감일자 : 2020. 3. 25.
-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소화기의 사용연장을 위한 성능확인검사의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됨에 따라 개선을 통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하고, 송수구를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서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 주요내용
  - 가. 기존 성능확인검사의 시료채취방법, 검사시료 수, 검사항목 개선 (안 [별표 1])
  - 나. 송수구를 형식승인에서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험시설 기준, 인증 처리기간, 합격표시 등 관련규정 개정(안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10], [별표 11])
  - 다. 성능확인 검사신청 시 첨부서류 추가(제품검사 합격표시번호 목록 1부)(안 [별지 제1호서식])

### 36.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20. 2. 14.
  - 마감일자 : 2020. 3. 11.
-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 및 지진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6860호, 2019.12.31. 공포, 2020.4.1. 시행)됨에 따라, 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
    - 1) 위원회 구성, 위원 자격요건,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의사·의결정족수, 자문기구 설치 근거 등을 규정
  - 나.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1) 위원회 구성, 위원 자격요건,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의사·의결정족수 등을 규정
  - 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1) 국가가 시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종류는 공동체 회복 관련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담 조언 등이며 비용 지원기간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정함
  - 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1) 포항트라우마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피해자 개인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피해자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 등이며, 그 운영을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위탁 가능
  - 마.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시행(안 제19조)
    - 1)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종류는 지진대비 훈련시설 및 안전교육시설 설치·운영, 포항지진 관련자료의 수집 및 보관 등이며,

사업 시행여부는 포항시 신청에 따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 심의 의결로 정함

바. 사무국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1) 사무국의 명칭은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으  
로 하고, 지원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일  
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하며, 직원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소속의 공무원과 관계 공공기관 단체 연구  
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 등으로 구성사. 부당이득의 환수의 방법  
등(안 제21조)

2) 부당이득(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등으로 지원금 수령  
시) 사실이 있는 경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부당이득  
사실·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납부기  
한까지 미납시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함

아.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2조, 별표)

1)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과·징  
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유형 및 위반 횟수별로 규정

### 3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20. 2. 14.

● 마감일자 : 2020. 3. 25.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료 신설, 용어 개정 사항 등을 어  
린이집의 세입·세출 예산 과목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계정과목 변동사항 반영 (안 별표 7, 8)

1)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지원해 온 ‘기본보육료’ 가 동 기본보육에 해당  
하는 보육료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기관보육료’ 로 명칭 변경

### 3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20. 2. 14.
- 마감일자 : 2020. 3. 25.
- 소규모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전시 시설을 사용하는 중고차 매매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수익성 부족으로 성능점검장 개설에 소극적인 지역에서 성능점검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능점검자의 신고자격 및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친환경 중고차의 매매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친환경차의 성능·상태점검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 완화 등(안 별표21의2 제1호)
    - 1)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공동 전시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성능점검시설 조항 삭제
    - 2) 전시시설의 연면적 기준에서 제외되는 시설 등을 명확히 함.
  - 나. 성능상태점검자의 시설·장비기준 등 완화(안 별표22)
    - 1) 성능점검 신고에 필요한 최소인력기준을 완화하고 성능점검자의 자격을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기능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로 확대
    - 2) 정비업 사업장에서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경우 정비업자의 시설·장비와 성능점검 시설·장비의 중복을 허용
  - 다. 친환경차의 성능상태점검 기준 신설(안 별표22, 별지 제82호)
    - 1)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사용연료 유형에 전기차, 수소전기차 항목을 신설하고, 세부점검항목에 고전원전기장치를 추가
    - 2) 성능상태점검 시설·장비기준에 친환경차 점검에 필요한 장비 및 안전장구를 갖추도록 하고, 친환경차 점검을 하려는 성능점검자는 국토부 고시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 라.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항목 정비(별지 제82호)

- 1) 성능점검이 필요한 일부항목을 성능점검기록부에 추가·수정하고, 중고차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책임소재·점검기준·안내사항 등을 명확히 함.